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1482
----------	------

제출년월일: 2013. 3.

제 출 자: 최근배의원 홍진옥의원
김기자 의원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경비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3조)
-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8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2013. 2. 15. ~ 3. 7.) : 의견없음
- 조례안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 간 조정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충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의 종합 지원 거점으로 평생교육 진흥과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시민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조(경비 보조와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평생교육 업무 관련 부서의 장,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4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민에게 통합적·효율적·체계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과 이행
2. 평생교육 시책 개발 및 연구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평생교육 기관이나 단체 간 연계 협력 구축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학습상담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제15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면 경우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 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